

목 차

정 정 신 고 (보 고)	1
주주총회소집공고	3
주주총회 소집공고	4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5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5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6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6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7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7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7
III. 경영참고사항	8
1. 사업의 개요	8
가. 업계의 현황	8
나. 회사의 현황	9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11
□ 재무제표의 승인	11
□ 정관의 변경	15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20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21

정정신고(보고)

2012년 03월 1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03.08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기재오류		
II.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	666,666,666
1.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666,666,666
합 계		56,700,565,395	57,367,232,061
III.이익잉여금처분액		12,400,000,000	55,400,000,000
3.임의적립금		-	43,000,000,000
IV.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4,300,565,395	1,967,232,061

주주총회소집공고

2012년 3월 8일

회 사 명 : 을촌화학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송낙정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70-1
(전 화)02-822-0022
(홈페이지)<http://www.youlcho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 (성 명)김정중
(전 화)02-820-847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9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와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 제39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일시 : 2012년 3월 23일(금요일) 오전 10시

2.장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70-1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2번 출구 약 300m)
농심관 강당(지하1층)

3.회의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가. 영업보고

나. 감사보고

2) 부의사항

제1호의안 : 제39기(2011.1.1~2011.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의안 :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 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 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 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안내사항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간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여종기 (출석률: 100%)	임희택 (출석률: 100%)	-	-
1	2011.02.08	외부감사인선임규정 개정	찬성		-	-
2	2011.02.09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의 건 -한영회계법인 (향후 3개 사업년도 : 39~41기)	찬성		-	-
3	2011.02.11	제3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찬성		-	-
4	2011.02.11	제3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정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찬성		-	-
5	2011.03.11	대표이사 선임의 건 -송녹정(신규)	-	찬성	-	-
6	2011.03.11	퇴직임원에 대한 퇴직금 배율 조정의 건 고문 및 상담역 선임의 건	-	찬성	-	-
7	2011.03.23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기간 연장의 건 -YOULCHON VINA PLASTIC JSC. -보증금액 : 미화 삼백만불 -보증 연장 기간 : 1년	-	찬성	-	-
8	2011.06.15	-기업구매전용카드 한도약정 체결의 건 우리은행/약정한도 일백억원 -한도대출 재약정의 건 우리은행/당좌대출한도(일십구억원) 일람불수입외화지급보증(미화일천만불)	-	찬성	-	-
9	2011.06.20	-퇴직임원에 대한 퇴직금 배율 결정 -상담역 선임의 건	-	찬성	-	-
10	2011.08.17	2011년도 임원, 집행임원 보수결정의 건	-	찬성	-	-
11	2011.10.11	전자방식매담대 과목변경 및 한도약정 체결의 건 (전자방식매담대에서 상생매담대-구매자기준으로)	-	찬성	-	-
12	2011.10.27	설비증설(OPP기)투자의 건 -투자금액 약 670억원	-	찬성	-	-
13	2011.11.21	-퇴직임원에 대한 퇴직금 배율 결정 -상담역 선임의 건	-	찬성	-	-

14	2011.12.15	집행임원 승진 및 선임의 건	-	찬성		
15	2011.12.20	-퇴직임원에 대한 퇴직금 배율 결정 -상당역 선임의 건	-	찬성		
16	2011.12.27	2011년도 임원 단기성과 임센티브 지급의 건	-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1	2,000,000	35,000	35,000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이사 보수한도액이며 지급액은 사외이사1명에 대한 건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천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주)농심 (계열회사)	매출거래	2011.01.01~2011.12.31	179,591,374	47.68%
	매입거래	2011.01.01~2011.12.31	74,001	0.02%
	소계	2011.01.01~2011.12.31	179,665,375	47.70%

※ 상기 비율은 매출액에 대한 비율이며, 매출거래는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거래하며 실거래는 수시로 발생하고 위 거래금액은 2011년도 1년간 실 거래금액입니다.

※ 최근사업년도 말 현재 매출총액기준 총거래액 5%이상을 기재함.

- 2011.12.31 매출액 376,634,931,879원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① 연포장 사업부문

플라스틱필름, 종이, 알루미늄 등에 그라비아인쇄 및 접합, Slitting 등 가공생산공정을 거쳐 식품종류인 라면, 스낵, 냉동식품, 레토르트등과 생활용품류인 섬유유연제, 세제류 및 화장품, 의약품, 산업용포장지 등 각종 포장지를 제조, 판매.

② 필름 사업부문

Polypropylene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용융 압출 및 냉각 과정을 거치며, 생산 방식에 따라 OPP, CPP, Shrink Film으로 구분하여 생산하며 주용도로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식품, 문구, 섬유 등의 제품포장재와 일반 산업재인 이형용, 전사용의 용도로 판매 함

③ 소재 사업부문

광학 PET, 종이 등의 기초 소재에 Silicone, 점착제, 접착제 등을 박막으로 코팅하여 IT, 자동차, 건축산업 등에 사용되는 광학 Film류, 보호 Film류, 이형 Film류 생산과 휴대폰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포장하는 Cell Pouch 생산, 반도체, Chip Connector 등 전자부품 이송용 Carrier Tape, 치약 등의 포장용 튜브를 생산 판매

④ 골판지 사업부문

원지를 투입하여 콜게이트 공정을 통해 생산된 골판지 원단에 인쇄, 타발 가공을 하여 골판지 상자를 생산한 후 라면, 스낵 및 기타 상품의 외포장 등의 용도로 판매.

2. 산업의 성장성

(매출액- 단위:백만원)

	39기	38기	37기	36기	35기
연포장사업부	182,069	167,080	163,574	154,221	150,033
필름사업부	73,431	66,077	59,514	58,260	54,156
골판지사업부	40,787	35,492	31,071	30,841	29,641
소재사업부	80,348	74,034	54,341	34,780	26,571
총계	376,635	342,683	308,500	278,102	260,401

3. 경기변동의 특성

포장산업은 식품산업의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식품산업은 국내 소비경제의 상황과 경기전반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즉,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최근 포장산업 전반에 걸친 Global 경쟁력은 범용 제품의 가격경쟁력과 고부가 기능성 포장재의 설비 및 기술적 차별화와 포장재 관련 소재의 차별화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재의 제품 보호와 유통성의 기본적인 기능은 국가간 관련 제조업체간 품질평준화로 인하여 핵심 경쟁요소가 아닌, 포장재의 편의성, 기능적 차별성 및 친환경포장 소재 및 선도유지 포장소재 개발 등 및 그 제조 기술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의 포장재 제조기업의 설비 개체와 품질 수준 Up-Grade로 인하여 Global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오랜 포장재 제조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당사의 BOPP등 포장소재의 제조 기술과 접목하여 고품질의 기능성 포장소재의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포장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을 위한 Service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납기와 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이고 과감한 원가혁신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미래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전자산업소재산업은 첨단 Display 분야의 주요 소재로서 매우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와 제조 생산 Line 운영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Display 산업 수준은 TV는 물론 휴대폰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명실공히 Global 세계 최대의 생산능력과 최고수준의 품질로서 국내 경제성장을 리드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소재역시 정밀가공, 섬세관리 기술을 요함은 물론 고도의 Clean 제조공장의 보유와 운영능력과 함께 관련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신제품 개발에 대응하는 Speedy한 신제품개발 R&D 역량이 전자산업소재분야의 핵심 경쟁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5. 자금조달상의 특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특이사항 없음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2011년은 유로존 재정위기와 미국 재정적자 심화로 환율 불안 요인이 증가되었으며, 3월 동일본 대지진 및 이집트, 레바논 사태에 따른 중동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면서 무역 1조 시대에 진입하였고 IT분야에서 세계 Top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 세계 시장을 리드함으로써 율촌화학이 미래 성장사업으로 육성중인 소재사업의 전망도 밝게 열리고 있습니다.

2011년 율촌화학은 “整備”를 경영지침으로 정하여 포장사업 부문의 BOPP Film 신규 설비 도입을 결정하였고 연포장 사업의 설비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 Master Plan을 수립 하였습니다. 더욱이 비 수익사업과 제품구조 정비를 통해 이익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미래형 신 수종사업 발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과 미래 지향의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IT 산업의 성장과 함께 당사의 미래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소재 사업 부문은 10대 전략 제품을 선정하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영활동 성과로 2011년 우리 회사의 영업실적은 전년대비 9.9% 성장한 3,766억

의 매출과 220억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가 만성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수출 감소 및 가계 부채 증가로 인한 내수침체 등 지난해 보다 낮은 성장이 예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영환경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올촌화학은 지난해 “整備”를 통해 수립한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商品力”을 경영지침으로 정하여 경쟁력 있는 Film 공장 구축 및 설비 Infra 를 개선함으로써 차별화된 제품경쟁력을 확보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여 포장과 전자소재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의 연포장, Film, 골판지등 포장재 및 포장관련 소재사업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주)농심을 비롯한 국내 대표 우량기업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시장점유율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형지, 점착소재등 전자산업소재 역시 짧은 業歷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국내 관련 업계의 상위권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특히, Display 관련산업 분야는 그 소재의 종류와 분야가 다양하여 정확한 국내 Market Share를 추정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3) 시장의 특성

- 연포장 시장

연포장 시장은 식품 및 생활용품 등 소비재 관련시장에서 건축, 의료, 전기 전자 관련 산업재 시장으로 그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소비재 관련 연포장 시장은 내수 경기의 변동과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계절적 수요변동이 큰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들어 친환경의 사회적 Needs로 인하여 포장 경량 Slim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범용포장재의 경우 Global 품질평준화와 가격경쟁 심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소재와 제품개발을 통한 새로운 수요창출로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 Film 시장

BOPP, CPP, 수축필름은 전통적으로 우수한 인쇄성과 가공 용이성으로 연포장재의 대표 소재로서 연포장 시장의 수급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Film의 주요 원재료인 P.P Resin은 국제 유가변동과 국제수급 변화에 많은 영향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Film 시장 역시 포장재관련 소재시장 외 산업 소재용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되는 추세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당사 역시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제조설비 고도화와 고부가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전자산업소재

세계적인 Display관련 산업의 발전과 비약적인 수요확대와 함께 관련 소재의 수요의 확대 등 관련산업 전체가 동반 성장하는 시장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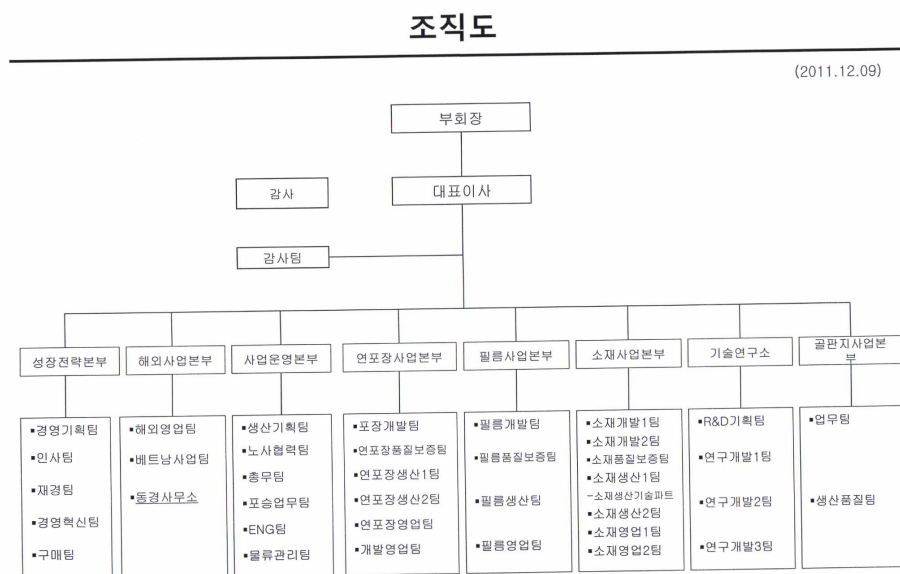
다만, 첨단 소재로서 고 정밀, 무결점의 양산품질 요구와 Speedy한 신제품 개발가 반드시 요구되는 기술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시장 내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고, 비교적 제품 Life Cycle이 짧은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시장에서의 기술적 특성과 Needs를 제고하기 위하여 R&D 분야에 대한 투자와 개발역량 제고에 최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곽판지분야

곽판지분야는 인터넷 및 택배, 홈쇼핑 등에 의한 곽판지 상자의 수요의 증가와 농산물시장에서의 소분 포장 판매 증가로 인하여, 국내 소비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높은 원재료 비율로 인하여 국제 원지가격 변동에 민감하며, 또한 운송, 보관비등 의 유통비용에 많은 영향으로 판매지역이 한정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곽판지의 지속적인 기능성 제품 개발을 통해 곽판지관련 산업 수요증가에 대응할 것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상기 영업개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39 기 2011. 12. 31 현재

제 38 기 2010.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39 기	제 38 기
자산		
유동자산	168,534,410,979	156,135,922,865
현금및현금성자산	2,557,438,881	7,065,185,871
단기금융상품	10,210,000,000	10,030,000,000
매출채권	111,493,908,652	95,962,514,878
기타채권	1,791,434,361	1,984,787,099
기타유동금융자산	5,610,000	87,520,000
재고자산	41,429,629,095	32,447,385,633
기타유동자산	1,046,389,990	926,229,316
매각예정비유동자산	0	7,632,300,068
비유동자산	220,449,863,311	221,658,283,237
장기금융상품	1,106,000,000	1,046,000,000
기타채권	8,363,952,350	8,202,304,68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594,375,000	567,125,000
유형자산	200,050,101,700	200,320,543,994
무형자산	9,342,042,481	10,506,794,807
공동지배기업투자	993,391,780	1,015,514,756
자산총계	388,984,274,290	377,794,206,102
부채		
유동부채	76,725,313,953	70,632,896,957
매입채무	47,939,851,114	51,483,634,860
기타채무	11,577,223,097	12,136,712,738
단기차입금	10,430,092,000	1,412,236,000
당기법인세부채	4,307,227,210	2,539,875,004
기타유동부채	2,470,920,532	3,060,438,355
비유동부채	17,920,975,762	20,237,121,659
확정급여부채	1,380,077,624	4,519,745,814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4,302,935,810	3,334,801,199
이연법인세부채	12,237,962,328	12,382,574,646
부채총계	94,646,289,715	90,870,018,616
자본		

자본금	14,776,380,000	14,776,380,000
자본잉여금	9,405,843,440	9,405,843,44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07,932,273)	(551,042,657)
이익잉여금	270,963,693,408	263,293,006,703
자본총계	294,337,984,575	286,924,187,486
자본과부채총계	388,984,274,290	377,794,206,102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39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제 38 기 (2010. 01. 01 부터 2010.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9 기	제 38 기
매출액	376,634,931,879	342,683,549,125
매출원가	326,557,480,977	289,755,556,007
매출총이익	50,077,450,902	52,927,993,118
판매비와관리비	28,639,109,022	26,164,479,047
기타영업수익	10,760,313,301	2,268,062,012
기타영업비용	4,302,946,196	3,342,640,347
영업이익	27,895,708,985	25,688,935,736
금융수익	820,041,257	1,218,726,436
금융비용	255,612,914	67,841,980
공동지배기업투자손익	234,766,640	(976,680,47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8,694,903,968	25,863,139,721
법인세비용	6,725,388,952	4,942,955,978
당기순이익	21,969,515,016	20,920,183,743
기타포괄손익	(2,155,717,927)	(4,186,294,430)
지분법자본변동	(256,889,616)	(139,875,574)
보험수리적손익	(1,898,828,311)	(4,046,418,856)
총포괄손익	19,813,797,089	16,733,889,313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886	844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39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제 38 기 (2010. 01. 01 부터 2010.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9 기	제 38 기
I.미처분이익잉여금	56,700,565,395	21,909,346,957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842,680,291	1,116,261,459
2.회계변경의 누적효과	34,787,198,399	-
3.당기순이익	21,969,515,016	20,793,085,498
4.보험수리적손실	(1,898,828,311)	-
II.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666,666,666	1,333,333,334
1.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666,666,666	1,333,333,334
합 계	57,367,232,061	23,242,680,291
III.이익잉여금처분액	55,400,000,000	21,400,000,000
1.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
2.배당금	12,400,000,000	12,400,000,000
가.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 통주:당기:500원(100%) 전기:500원(100%)	12,400,000,000	12,400,000,000
3.임의적립금	43,000,000,000	9,000,000,000
IV.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967,232,061	1,842,680,291

※비교표시된 전기(38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39기	제38기
주당액면가액 (원)		500	500
당기순이익 (백만원)		21,969	20,920
주당순이익 (원)		886	844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12,400	12,400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현금배당성향 (%)		56.44	59.27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5.9	5.4
	우선주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우선주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보통주	500	500
	우선주	-	-
주당 주식배당 (주)	보통주	-	-
	우선주	-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안)	변경의 목적
--------	-----------	--------

<p>제8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p> <p><신설></p> <p>제8조의2(우선주식의 총수와 내용) ①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p> <p>②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 1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p> <p>③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p> <p>④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p> <p>⑤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p> <p>⑥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p> <p>⑦우선주식의 종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5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8조(주식의 종류)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p> <p>제8조의2(종류주식의 총수와 내용) ①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p> <p>②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1% 이상 1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우선 배당한다.</p> <p>③----- 종류주식의 ----- ----- -----.</p> <p>④종류주식에 ----- ----- -----.</p> <p>⑤종류주식에 ----- ----- -----.</p> <p>⑥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 -----.</p> <p>⑦종류주식의 ----- -----.</p> <p>⑧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p> <p>⑨전환으로인하여발행하는주식에대한이익의 배당에관하여는제10조의2의규정을준용한다</p>	<p>(상법개정) 제344조 종류주식 근거규정</p> <p>항 분리</p>
--	---	---

<p>제10조(신주인수권) ①<생략> ②<생략> <신설></p> <p>③<생략> ④<생략></p> <p><신설></p> <p>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①~⑤<생략></p> <p>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생략> ②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상무보 등의 집행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p> <p>제35조(감사의 직무) ①~②<생략> <신설></p> <p><신설></p> <p>③<생략> ④<생략> <신설></p>	<p>제10조(신주인수권)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p> <p>제14조(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발행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p> <p>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①~⑤<현행과 같음></p> <p>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현행과 같음> ②----- ----- -----등을-----</p> <p>제35조(감사의 직무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현행과 같음> ⑥<현행과 같음> ⑦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p>	<p>(상법개정) 제418조</p> <p>번호변경 번호변경</p> <p>(상법개정) 제469조</p> <p>일반규정 신설</p> <p>조번호 변경</p> <p>(상법개정) 제408조의2 집행임원과 구별</p> <p>(상법개정) 제412조 제412조의 4 감사의 이사회 소집권 신설</p> <p>번호변경 번호변경</p>
--	--	---

<p>제36조(감사의 감사록)</p> <p><u><신설></u></p> <p>제38조(이사회 결의방법) ①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u><단서 신설></u></p> <p>②~③<생략></p> <p>제40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②<생략> ③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집행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퇴직금은 제2항의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p> <p>제43조(재무제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3.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 	<p>제35조의2(감사의 감사록)</p> <p>제36조(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8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②~③<현행과 같음></p> <p>제40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②<현행과 같음> ③-----임원 의----- -----.</p> <p>제4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p>조번호변경</p> <p>(상법개정) 제400조</p> <p>이사, 감사의 책임감경 근거 규정 신설</p> <p>(상법개정) 제397조의2 제398조</p> <p>(상법개정) 제408조의2 집행임원과 구별</p> <p>(상법개정) 제447조 제449조의2</p>
---	---	--

<p>산서</p> <p><신설></p> <p>②감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u>1주간전에</u> 감사 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③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④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44조의2(주식의 소각) ①~④<생략></p> <p>제45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u>금전과 주식으로</u> 할 수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생략></p>	<p>3.그 밖의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p> <p>②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p> <p>③-----1주전까지-----</p> <p>④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승인할 수 있다.</p> <p>1.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p> <p>⑤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⑥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p> <p>⑦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p> <p>제44조의2(주식의 소각) <조항 삭제> ①~④<삭제></p> <p>제45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삭제</p> <p>②<현행과 같음></p>	<p>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승인 -배당포함 -주주총회보고</p> <p>번호변경</p> <p>번호변경</p> <p>번호변경</p> <p>(상법개정) 제343조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 소각 가능</p> <p>(상법개정) 제462조의4 종류주식과 관련된 사항으</p>
--	--	--

<p>제45조의2(중간배당) ①이 회사는 7월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u>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u></p> <p>②<생략> ③<생략> 1. 직전결산기의 <u>자본의 액</u> 2.<생략> <u><신설></u> 3.<생략> 4.<생략> 5.<생략> ④<생략> ⑤제8조의2의 우선주식에 대한 중간 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11일부터 시행 한다. <u><단서 신설></u></p>	<p>제45조의2(중간배당) ①----- -----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단서 삭제></p> <p>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 직전결산기의 <u>자본금의 액</u> 2.<현행과 같음>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현행과 같음> 5.<현행과 같음> 6.<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⑤<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 2012년 3월 23일부터 --. --.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3항, 제14조, 제35조 제3항 및 제4항 제7항, 제36조, 제38조 제1항, 제43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로 삭제함</p> <p>번호변경</p> <p>(상법개정) 제462조의3 제462조의4 중간배당에 대하여도 정관으로 현물배당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p> <p>번호변경 번호변경 번호변경</p> <p>종류주식과 관련된 사항으로 삭제함.</p>
---	---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4 (1)	3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000,000,000원	2,000,000,000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350,000,000원	350,000,000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